

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21. 5. 1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의 “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”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) 이 규정은 교육부의 “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”에 근거한다.

제3조(규정의 적용범위) 이 규정은 “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”에 한정하여 적용되며, 우리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한다.

제4조(운영체제) ① 총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지침에 따른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운영, 미래융합학부 운영 지원 및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성인학습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5조(사업단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체제 설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.
2. 성인학습자 유치를 위한 입시홍보 계획 수립
3.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4.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연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
5. 성인학습자 취·창업 교육지원 사업
6. 기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

제6조(조직) ① 총장은 사업단의 장(이하 “사업단장”이라 한다)을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,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과 관련한 우리대학의 각종 위원회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.

②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

제7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업추진위원회는 본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1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③ 추진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5-0-33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

1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정책 방안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 신청 및 결과, 성과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관련 운영규정 자문에 관한 사항
4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 소요예산의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

④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성과관리) 사업단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사업관리부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을 20% 이상 위촉한다.

③ 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평가
2.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
3.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
4. 개별사업 결과분석, 종합평가 및 환류
5. 그 밖의 사업평가에 관련된 주요 사항

④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재정 및 회계)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우리대학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및 정부기관의 국고보조금, 지자체의 사업지원금,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은 관계법령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 관리운영 매뉴얼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비 집행 세부기준을 따른다.

③ 기타 외부재원 사업비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이 없는 경우 우리대학 「예산편성·운용 지침」을 따른다.

④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